

EFETE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 입주자모집공고



※ 단지 주요정보 (보양문의) 031-632-1237

주택유형	해당지역	기타지역	규제지역여부
민영	경기도 인천시 거주자	경기도, 서울시, 인천시 거주자	비규제지역
재당제한	전매제한	거주유기기간	분양가상한제
없음	6개월	없음	미적용

1 단지 유의사항

-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.06.27.(금)입니다. (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, 나이,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입니다.)
-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, 서울시, 인천시)에 거주(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)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(국내에서 거주하는 해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)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청약신청자 중 경정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대상지역인 인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.
-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

구분	특별공급	일반공급 1순위	일반공급 2순위	당첨자 발표	서류 접수	계약체결
일정	2025.07.08.(목)	2025.07.09.(수)	2025.07.10.(목)	2025.07.17.(목)	2025.07.19.(토) ~ 2025.07.22.(화)	2025.07.28.(월) ~ 2025.07.30.(수)
방법	- PC-모바일: 청약홈(09:00 ~ 17:30) - 현장접수: 사업주체 건물주	- PC-모바일: 청약홈(09:00 ~ 17:30) - 현장접수: 청약홈장 가입은행	- PC-모바일: 청약홈 - 이전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 건물주 - 경기도 인천시 중포동 49-1			

※ 고령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물주 청약접수 (10:00~14:00, 은행장급 접수 불가),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(09:00~16:00)에서 청약 가능합니다.(단, 은행 영업일제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)

※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:30까지 가능하며, 청약신청일 당일 17: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능합니다.

2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

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인천시 주택과 - 17605호(2025.06.27.)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

■ 공급위치: 경기도 인천시 부발읍 아이리 산 111번지 일원

■ 공급규모: 아파트 지하 3층 ~ 지상 26층, 7개동, 총 706세대

■ [특별공급 354세대(기권추진) 63세대, 다자녀가구 : 69세대, 신혼부부 : 147세대, 생애최초 : 56세대, 노부모부양자 : 19세대) 포함] 및 부대복리시설

■ 입주예정일자: 2028년 02월 예정 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)

■ 공급대상 (인영주택) (단위:㎡, 세대수)

관리 번호	모델	연면적 (건물면적)	표기	주거공급	주거공용	소계	면적(지하 주차장 등)	면적	대지비율	세대수	기권 추진	다자녀 가구	신혼 부부	생애 최초	노부모 부양자	계	일반공 급세대수	우상향형 세대수
2025 000242	01	084.9036A	84A	84.9036	28.4814	113.3850	64.5365	177.9215	52.8497	319	31	31	73	28	9	172	147	15
	02	084.90218	84B	84.9021	28.3580	113.2601	64.5354	177.7955	52.8488	286	28	28	65	25	8	154	132	14
	03	084.7631C	84C	84.7631	28.2349	112.9980	64.4296	177.4276	52.7622	41	4	4	9	3	1	21	20	2
	04	115.1395	115	115.1395	36.7572	151.8967	87.5193	239.6140	71.6705	60	0	6	0	0	1	7	53	4

■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(단위: 세대)

구분	약식 표기	84A	84B	84C	115	합계
기권추진 특별공급						
	국가유공자 등	3	3	1	0	7
	장기복귀 세대군인	3	3	1	0	7
	10년 이상 복귀군인	3	3	1	0	7
	장애인	19	17	1	0	37
	중소기업 근로자	3	2	0	0	5
	소계	31	28	4	0	63
다자녀가구 특별공급						
	인천시 및 경기도 (50%)	16	14	2	3	35
	서울시 / 인천시 (50%)	15	14	2	3	34
	소계	31	28	4	6	69
신혼부부 특별공급						
	신혼부부 특별공급	73	65	9	0	147
생애최초 특별공급						
	생애최초 특별공급	28	25	3	0	56
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						
	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	9	8	1	0	19
	합계	172	154	21	7	354

•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,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습니다.

■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(단위: 원)

약식 표기	총 구분	해당 세대 수	토지비	건축비	부가세	공급금액	계약금(5%)		중도금(60%)						잔금(35%)
							1차	2차	1차(10%)	2차(10%)	3차(10%)	4차(10%)	5차(10%)	6차(10%)	
							계약금 30% 이내	2025.10.29	2025.12.23	2026.06.23	2026.12.31	2027.04.23	2027.08.23	입주 지정일	
84A	1층	5	184,231.975	438,578.025	-	612,810.000	10,000,000	20,640.500	61,281.000	61,281.000	61,281.000	61,281.000	61,281.000	214,483.500	
	2층	12	184,231.975	431,778.025	-	616,010.000	10,000,000	20,800.500	61,601.000	61,601.000	61,601.000	61,601.000	61,601.000	215,603.500	
	3층	12	184,231.975	434,968.025	-	619,200.000	10,000,000	20,960.000	61,920.000	61,920.000	61,920.000	61,920.000	61,920.000	216,720.000	
	4~5층	30	184,231.975	441,348.025	-	625,580.000	10,000,000	21,279.000	62,558.000	62,558.000	62,558.000	62,558.000	62,558.000	218,953.000	
	6~15층	150	184,231.975	447,728.025	-	631,960.000	10,000,000	21,598.000	63,196.000	63,196.000	63,196.000	63,196.000	63,196.000	221,186.000	
	16층 이상	110	184,231.975	454,118.025	-	638,350.000	10,000,000	21,917.500	63,835.000	63,835.000	63,835.000	63,835.000	63,835.000	63,835.000	223,422.500
84B	1층	5	184,221.273	419,952.727	-	604,180.000	10,000,000	20,209.000	60,418.000	60,418.000	60,418.000	60,418.000	60,418.000	211,463.000	
	2층	11	184,221.273	423,102.727	-	607,330.000	10,000,000	20,366.500	60,733.000	60,733.000	60,733.000	60,733.000	60,733.000	212,565.500	
	3층	12	184,221.273	426,242.727	-	610,470.000	10,000,000	20,523.500	61,047.000	61,047.000	61,047.000	61,047.000	61,047.000	213,664.500	
	4~5층	28	184,221.273	432,542.727	-	616,770.000	10,000,000	20,838.500	61,677.000	61,677.000	61,677.000	61,677.000	61,677.000	215,889.500	
	6~15층	139	184,221.273	438,832.727	-	623,060.000	10,000,000	21,153.000	62,306.000	62,306.000	62,306.000	62,306.000	62,306.000	218,071.000	
	16층 이상	91	184,221.273	445,122.727	-	629,350.000	10,000,000	21,467.500	62,935.000	62,935.000	62,935.000	62,935.000	62,935.000	220,272.500	
84C	1층	2	183,926.829	430,013.171	-	622,940.000	10,000,000	21,147.000	62,294.000	62,294.000	62,294.000	62,294.000	62,294.000	218,029.000	
	2층	2	183,926.829	422,253.171	-	626,180.000	10,000,000	21,309.000	62,618.000	62,618.000	62,618.000	62,618.000	62,618.000	219,163.000	
	3층	2	183,926.829	445,933.171	-	629,430.000	10,000,000	21,471.500	62,943.000	62,943.000	62,943.000	62,943.000	62,943.000	220,300.500	
	4~5층	4	183,926.829	451,983.171	-	635,910.000	10,000,000	21,795.500	63,591.000	63,591.000	63,591.000	63,591.000	63,591.000	222,586.500	
	6~15층	20	183,926.829	458,473.171	-	642,400.000	10,000,000	22,120.000	64,240.000	64,240.000	64,240.000	64,240.000	64,240.000	224,840.000	
	16층 이상	11	183,926.829	464,963.171	-	648,890.000	10,000,000	22,444.500	64,889.000	64,889.000	64,889.000	64,889.000	64,889.000	227,111.500	
115	1층	2	249,833.333	555,024.243	55,502.424	860,360.000	10,000,000	33,018.000	86,036.000	86,036.000	86,036.000	86,036.000	86,036.000	301,126.000	
	2층	2	249,833.333	559,106.666	55,910.666	864,850.000	10,000,000	33,242.500	86,485.000	86,485.000	86,485.000	86,485.000	86,485.000	302,697.500	
	3층	2	249,833.333	563,178.788	56,317.878	869,330.000	10,000,000	33,466.500	86,933.000	86,933.000	86,933.000	86,933.000	86,933.000	304,265.500	
	4~5층	8	249,833.333	571,324.243	57,132.424	878,290.000	10,000,000	33,914.500	87,829.000	87,829.000	87,829.000	87,829.000	87,829.000	307,401.500	
	6~15층	40	249,833.333	579,489.697	57,949.697	887,250.000	10,000,000	34,362.500	88,725.000	88,725.000	88,725.000	88,725.000	88,725.000	310,537.500	
	16층 이상	6	249,833.333	587,615.152	58,761.515	896,210.000	10,000,000	34,810.500	89,621.000	89,621.000	89,621.000	89,621.000	89,621.000	313,673.500	

※ 주택공급 시 [주거형] 또는 [평형]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(㎡)으로 기재하되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,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방법(단위인 제곱미터(㎡)로 표기하였으나)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(평형별상한비율: 공급면적(㎡)×0.3025 또는 공급면적(㎡)÷3.3058)

※ 면적 및 인색(정장)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건물주에게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분양대상, 발코니 확장, 추가 선택품목(유상옵션) 납부계획 및 납부방법

구분	계약번호	금융기관명	예금주
분양대상	355-0093-1909-33	농협	주택도시보증공사 등부PF금융회사
발코니 확장	355-0093-1908-03	농협	주택도시보증공사 등부PF금융회사
추가 선택품목(유상옵션)	1005-904-766931	우리은행	주택도시보증공사 등부PF금융회사

- 분양대상, 발코니 확장, 추가 선택품목(유상옵션) 납부계획:는 서로 상이하지 않아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분양대상, 발코니 확장, 추가 선택품목(유상옵션)을 반드시 상기 예금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,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, 또한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- 지정된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에 지정된 납부방법에 상기 납부계획에 입합하지가 바리며,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.
- 무통장 입금시에는 통장 및 계좌의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무통장 입금 시 예시: 10105 10010 계좌지 → 1011001(종강동) / 10105 2010 계좌지 → 1010201(종강동)
- 계약 시 상기 계좌로 입금 후 건물주에게 납부명세서(입금증, 이체증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[건물주내에서 계약금(현금 또는 수표) 수납불가, 신용카드로 결제불가]
- 계약금입금에 따른 무통장입금 시 수취지 및 원산지, 시지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타의의와 동 계약금 납부방법에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,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주에서는 일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납부예정일이 변동(변기) 될경우 계약서 기재에 따라, 우편을 통로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. (수신부처에 대한 책임없음)
- 국토교통부 전산망제 및 계약서 상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공급자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작적자로 판정될 경우, 사업주에게 규정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, 환불금에 대해 별도도 미지급이 발생되지 않습니다.
- 계약금,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때는 공휴일인 경우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.(연례로 납부 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시에는 연례로 납부한 것으로 유의 합니다.)

3 특별공급

구분	내용						
공급기준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및 제8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없음) ※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 같은 청약신청자의 당첨인원인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. 다만, 2024.03.25. 시정인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, 중복청약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						
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처리방법</th></tr><tr><td>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</td><td>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자는 유효하며, 당첨자발표일이 높은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</td></tr><tr><td>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</td><td>부부 중복청약인 경우 ※ 본 단위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자는 유효하며, 접수일시가 높은 당첨자는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</td></tr></table>	구분	처리방법	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	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자는 유효하며, 당첨자발표일이 높은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	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	부부 중복청약인 경우 ※ 본 단위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자는 유효하며, 접수일시가 높은 당첨자는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
구분	처리방법						
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	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자는 유효하며, 당첨자발표일이 높은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						
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	부부 중복청약인 경우 ※ 본 단위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자는 유효하며, 접수일시가 높은 당첨자는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						
무주택 요건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,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 •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-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 •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,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.						
청약통장 자격요건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효범무 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• 기관추천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특별공급: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•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: 무주택세대주 요건						
청약통장 자격요건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효범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• 기관추천 특별공급(국가유공자 등, 장애인 제외) /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/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저축액, 연적액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통장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(잔용잔액 85% 이하 주택형에 한함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저축액, 연적액 예치금액 이상인 분 • 생애최초 /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저축액, 연적액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통장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(잔용잔액 85% 이하 주택형에 한함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저축액, 연적액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						
타이 및 청약 요건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인천시 주택과 - 17605호(2025.06.27.)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• 공급위치: 경기도 인천시 부발읍 아이리 산 111번지 일원 • 공급규모: 아파트 지하 3층 ~ 지상 26층, 7개동, 총 706세대 • [특별공급 354세대(기권추진) 63세대, 다자녀가구 : 69세대, 신혼부부 : 147세대, 생애최초 : 56세대, 노부모부양자 : 19세대) 포함] 및 부대복리시설 • 입주예정일자: 2028년 02월 예정 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)						

※ 특별공급 유효범 청약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4 일반공급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)

- 일반공급 신청자격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, 서울시, 인천시)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
- ②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

■ 청약통장 자격요건
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구분	청약예금	청약통장	주택청약종합저축
1순위	• 청약예금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저축액, 연적액 예치금액 이상인 분 • 청약통장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(잔용잔액 85% 이하 주택형에 한함) • 주택청약종합저축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저축액, 연적액 예치금액 이상인 분	• 청약예금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저축액, 연적액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• 청약통장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(잔용잔액 85% 이하 주택형에 한함) • 주택청약종합저축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저축액, 연적액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	• 청약예금: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청약예금 저축액, 연적액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• 청약통장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(잔용잔액 85% 이하 주택형에 한함) • 주택청약종합저축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,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저축액, 연적액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

※ 지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.

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잔용잔액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.

구분	부발역 에피트 에디션	구분	부발역 에피트 에디션
전용면적 85㎡ 이하	200만원	전용면적 85㎡ 이하	200만원
전용면적 102㎡ 이하	300만원	전용면적 102㎡ 이하	300만원
전용면적 135㎡ 이하	400만원	전용면적 135㎡ 이하	400만원
모든 면적	500만원	모든 면적	500만원

※ 지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.

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잔용잔액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.

관리회사 및 관리금액 (※관리금액은 인허가 및 실제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.)				(단위: 원/부가가치세 포함)
구분	건조관리	전기관리	소방관리	통신관리
상 호	㈜이건종합건축사사무소	(주)건축사사무소스크랩스	㈜전원건축사사무소	㈜유원건축사사무소
금 액	4,121,820,159	607,629,994	819,492,000	253,000,000